

# 계약직 운영규칙 [ 1998. 7. 31 ]

[ 규칙 제53호 ]

전부개정 2012. 3. 15 규칙 제255호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319호  
 일부개정 2017. 6. 26 규칙 제322호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19. 1. 9 규칙 제335호  
 일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343호  
 일부개정 2020. 4. 1 규칙 제349호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보수규정)  
 일부개정 2023. 3. 2 규칙 제364호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23. 6. 30 규칙 제373호  
 일부개정 2023. 8. 24 규칙 제374호  
 전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9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6조의2 제1항 관련 계약직 직원의 채용자격·계약기준·근무내용 및 처우 등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소속 계약직 직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채용하는 초빙연구원 및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규정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수)** ① 계약직 직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되, 그 수는 「직제규정」의 [별표 2]에 따른 연구원 전체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수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29조에 따른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 전체 정원을 초과하여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자격기준)** ① 계약직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결격사유 기준은 인사복무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조(채용 등)**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공고기간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제6조(계약 등)** 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7조(채용기간)**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기간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연구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채용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채용기간의 만료)** ①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인사복무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발생 시
3. 「인사복무규정」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4. 기간제 근로자가 사망한 때
5. 기간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때
6.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② 근로계약기간 종료 30일 전에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통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채용기간 중 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인사복무규정」 등을 따른다.

④ 계약직 직원의 부서장은 소관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계약직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인사복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 ①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관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기관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①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계약직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직 직원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④ 원장은 연구원 직원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초빙연구원의 연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2조(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규정 등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4.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계약직 직원 임용 자격 기준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2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5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7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가'급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원 '나'급	가.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행정원	가.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자 다.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직급별 명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 초임 호봉 기준표

구 분	학위, 학력, 자격	초 임 호 봉
계 약 직	박사학위 소지자	7
	석사학위 소지자	4
	학사학위 소지자	3
	기 타	1

[별표 3]

### 경력 환산 기준표

구 분	경 력 내 용	환산율
계 약 직	1. 군 복무기간	10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100%
	3. 기타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및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100%

[별지 제1호 서식]

## 근로계약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 약 직 급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참여연구 과제명

2.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계약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3.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4.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5. 피계약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연구원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계약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 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며, 향후 재계약을 할 수 없다.

7. 근로계약후 피계약자에게 계약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 등에 의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